



즉시 배포용: 2024년 2월 6일

KATHY HOCHUL 주지사

HOCHUL 주지사, 신용카드 결제 추가 요금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2월 11일 일요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

Hochul 주지사는 고객 보호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에 2023년 12월 서명

신용 카드 결제 시 추가 요금을 부가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판매 전 추가 금액을 포함한 총 거래액 게시 의무

기업 지원을 위해 주무부는 신용카드 추가 부담액 [지침](#) 및 [동영상](#)을 제작해 기업의 법 준수 지원

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이 2024년 2월 11일 발효됨을 발표했습니다. 기존의 뉴욕 신용카드 추가부담법을 개선 및 명시화합니다.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(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, DCP)는 시장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지원하고 뉴욕주 법무장관과 지방 정부는 신용카드 추가부담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. 뉴욕주 주무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, DOS) 산하 소비자 보호국은 관련 지방 단체에 [DCP의 신용카드 추가 부담 개정 관련 문서\(Credit Card Surcharge Legal Update Letter\)](#)를 참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

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뉴욕 주민들은 게시되지 않은 신용카드 추가 부담액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 개인들은 추가 부담액을 나중에 알게 되는 일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 투명성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상인들은 이에 맞추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.”

Hochul 주지사가 2023년 12월 13일 서명한 이 법안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이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.

-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업체로 청구하는 신용카드 추가부담액 상한 지정.
- 사업체는 결제 전 다음의 내용을 의무 게시:
 - 신용카드 추가 부담액을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 총 비용. 또는
 - 신용카드와 현금 가격을 동시에 게시하는 2단계 가격 선택권.

Robert J. Rodriguez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뉴욕 주민은 자신이 추가 부담액을 포함한 구매하는 총 비용을 결제 전 알 권리가 있습니다. Hochul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은 고객과 사업 운영자 모두에게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추가 금액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.”

Jeremy Coone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가격 투명성은 중요합니다.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. 사업체들이 신용카드 결제 비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객들은 총 비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.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.”

Amy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“새로운 법안에 따라 판매자들이 신용카드 결제 비용을 밝히도록 의무화되며, 뉴욕 주민들을 숨겨진 가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 추가 비용은 현재 분명히 고지되며, 고객들은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번 법안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합니다. 뉴욕 주민을 보호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.”

법이 정하는 신용카드 추가부담액 게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주무부의 [신용카드 추가부담 지침\(Credit Card Surcharge Guidance Document\)](#) 및 [교육 동영상](#) 을 참조해 주십시오.

해야 할 일:

- 사업체는 낮은 현금 가격과 높은 신용카드 가격을 함께 게시.
- 사업체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가격을 게시하여 고객들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.
- 사업체는 신용카드 가격에 맞추어 모든 가격을 변경.

하지 말아야 할 일:

-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로 3.9 퍼센트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문구를 문과 계산대에 게시하는 것.
- “본 매장에서는 신용 카드 결제 시 4 퍼센트의 비용을 별도 징수합니다.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결제 할인을 받을 수 없으며 가격 내역은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”
- 서비스료, 봉사료, 처리 수수료, 비현금 조정, 처리비 등을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고객용 영수증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.
- 상품의 가격표에 “10.00 달러, 신용카드 결제 시 4 퍼센트 추가 요금”이라고 표시.

참고: 이 법은 체크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소비자 보호국은 부당한 사업 관행에서 소비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, 사업체 커뮤니티에 법을 준수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. 2024년 2월 11일 이후 법이 발효되면서, 지방 정부는 법 집행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 대한 추가 보호가 가능하며, 지방 정부는 시민을 위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추가적인 기회를 갖게 됩니다. 구매 시 신용카드 지불 가격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, DCP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고객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.

- [DCP에 신고 접수하여](#) 뉴욕주 상공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을 환불받거나,
- [법무장관에게 신고하거나](#) 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공인에 대한 지방 정부 집행에 참가.

뉴욕주 소비자 보호부 소개

뉴욕주 소비자 보호부는 소비자에게 리소스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기업 간의 자발적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소비자 지원 직통전화(Consumer Assistance Helpline) 1-800-697-1220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뉴욕주의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비자 불만 민원은 www.dos.ny.gov/consumer-protection를 통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..

기타 소비자 보호 팁 및 소비자 알림 정보를 보려면, 소비자는 DCP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Twitter(@NYSConsumer)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DCP를 팔로우하거나 Facebook(www.facebook.com/nysconsumer)을 방문하십시오.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주지사실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십시오. ny.gov/signup |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.

[구독 취소](#)